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9. 11.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8월 23일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8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9월 10일 제4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관련 법령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어 규칙(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를 폐지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유 재한)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 본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청에서는 '88년부터 현재까지 본조례로 정해진 과태료를 적용하여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 '95. 11. 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06) 제26조와
 - 같은 해 11월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06호) 제34조 그리고
 - 자치구 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 세부준칙안에 의거하여 구 조례를 정비하도록한 지시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본 전문위원이 관계법령 등 폐지근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1996. 8.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가스관련법령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어 규칙(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폐지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7호) 제26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 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5호) 제16조
-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 [대판 1992. 7. 28 92, 추 31]
- 연료 57244-775(96. 6. 15) “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준칙(안) 통보”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